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086호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(처분사전통지) 공시송달 공고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청문실시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등기우편 송달시도하였으나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(대표자)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8일
서울특별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」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

2. 청문 당사자(조합)

-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연번	인가번호	조합명	조합 소재지	대표자	청문사유
1	서울특별시 제2011-10호	참누리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, 비동 1420호	남문식	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
2	서울특별시 제2011-17호	국민복지의료 생활협동조합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-27 삼미뉴타워 2층	전완식	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

5. 법적근거
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」 제82조 제1항 제4호

6. 청문실시

- 일 시 : 2024. 8. 26.(월) 14:00 ~ 16:00
- 장 소 :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(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20층)
※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,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
- 기관명 :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☎02-2133-5364, xhflpbs328@seoul.go.kr)
- 주재자(소속, 성명, 직위) : 법무법인 천지인 배수진 변호사

7. 공고기간 : 2024. 7. 12.(금) ~ 8. 2.(금)

〈청문시 유의사항〉

1. 귀 조합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.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3. 또한,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4항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이 경우,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의견진술(청문)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란에 작성하여 2024. 8. 23.(금)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※ 우편주소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, 공정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 담당자 앞

4. 청문 진술을 위한 참석자(조합 대표자 또는 대리인)는 아래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참석자 신분증 및 단체인감증명서, 단체인감도장,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
- 2) 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후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(대리인 자격 입증서류) 지참 후 참석

5. 귀 조합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(담당자 ☎02-2133-53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